

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4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5. 6. 30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 변경 및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고, 제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
- (변경) 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

나. ‘고독사’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‘고독사’ 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위험자 범위 확대

다. ‘1인 가구’를 ‘사회적 고립가구’로 용어 변경(안 제1조 ~ 제5조, 제7조)

-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

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'1인 가구'에서 '사회적 고립가구'로 확대
라. 활동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
-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 사업 참여자 활동 활성화를 위한
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3조

나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7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24181호, 2025. 6. 10.)

라. 입법예고: 2025. 6. 2. ~ 6. 23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”를 “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단절된 1인 가구(이하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라 한다)”를 “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홀로 사는”을 “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”으로, “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”을 “등으로 임종하는 것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1인 가구의 사회적”을 “사회적”으로, “수립하여야”를 “수립해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1인 가구”를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”을 “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”으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1인 가구 중 경제적”을 “경제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인 가구”를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동 행정복지센터”를 “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수당)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 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」

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<u>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1인 가구”란 한 사람이 홀로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관계 등과 <u>단절된 1인 가구(이하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라 한다)</u>를 말한다.</p> <p>3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<u>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u></p> | <p><u>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2. ----- ----- <u>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</u>----- -----.</p> <p>3. ----- ----- <u>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 하던</u> ----- <u>등으로 임종하는 것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
4.5. (생략)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

1.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
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
4.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

--- 사회적 -----

----- 수립해야 -----.

제4조(적용 범위) -----

----- 사회적 고립가구-----
-----.

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
-----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-----
----- 수립·시행해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대상) -----

-----.

1. 경제적 -----

2. -----
사회적 고립가구 -----

| | |
|---|--|
| <p>3. <u>동 행정복지센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사회복지기관, 인적안</u> <u>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</u> <u>위험자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</u>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 | <p>3. <u>동 행정복지센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수당) <u>구청장은 고독사</u> <u>예방 및 위험자 발굴 지원 사업</u> <u>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</u> <u>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제10조(포상) ----- ----- ----- 「<u>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</u>」 --- -----.</p> |
|---|--|

근거법규

□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13., 2024. 2. 6.>

제13조(고독사 위험자 지원 대책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제27조(민간의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·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,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

2.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

3.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
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, 고독사 예방
관련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도의
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복지지원과
- 직 급: 지방사회복지주사보
- 이 름: 이현정
- 연락처: (052)290-4492